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484 공사대금 청구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829,876원 및 그중 896,829,876원에 대하여는 2022. 11. 29.부터, 나머지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9.부터 각 2024. 9.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7,571,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고, C은 이 사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다.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고, H은 G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I 외 1필지 일원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신축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2021. 6. 1.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E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J건물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J건물 철근콘크리트공사 일체

3.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I 외 1필지

4. 공사기간 : 착공 2021년 04월 07일

준공 2021년 12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 일십억오천만 원정(₩1,050,000,000)

부가가치세 : 별도

6. 대금의 지급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시 지급. (본 계약 특약을 우선으로 한다).

(중략)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본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 본 계약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최초발주자(건축주)의 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함.

3) 원고, G은 2021. 6.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G을 의미한다).

특약사항

1. “을”의 공사범위는 허가도면에 의하여 착공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모든 행위에 한한다. (단 설계비, 감리비 및 부가세 별도 매입세 6%, 수도 등 모든 인입비와 소방, 통신, 전기 감리비 및 옹벽공사는 별도로 한다).

2. 공사비는 현 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일금 삼십육억원정(₩3,600,000,000)(기준공사비 평당 5,000,000원¹⁾)으로 하며 설계변경시 변경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5. 공사기간은 본 공사 착공 후 10개월로 한다.

6. 공사비 지급은 “을”이 골조공사 완료시 10억 5천만원(2회 지급), 준공 전 10억 5천만원

(2회 지급)하며, 준공 후 대출 7억원(준공 후 30일 이내), 분양대금으로 8억원(분양대금 최우선 지급 및 대물 지급시 가격은 수수료 등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등

1) 원고는 2022. 8. 11.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피고는 2022.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정리·확인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건축주 부담 공사비 개요

K : 93,406,500원 (추후 별도 협의)
보강토 : 16,196,400원
민원처리비 : 20,000,000원
레미콘(지하층 준공 후 공사) : 780,000원
지하 방통 : 1,100,000원
L : 349,800원
진입도로 아스콘 : 20,000,000원
M : 5,470,000원
N(쓰레기) : 3,300,000원
O(에어컨) : 77,000,000원

144,196,200원²⁾

2022. 11. 15.

총 공사비 3,870,504,000원(세액 포함)

3) 피고는 2022. 11. 22.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행확약서

경기도 양평군 I 다세대 신축공사 공사대금 중 미불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할 것을

1) 5,000,000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키로 보인다.

2) 앞서 기재된 공사비 항목 중 'K'에 관한 93,406,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합계 금액이다.

확약한다.

1. 당해현장 J건물 전체 잔여 세대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전체를 C이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경기도 남양주시 P건물 Q, R호를 B은 C에게 지불할 미불공사비 일부분으로 C에게 대물 변제한다.
기존 용자금과 금융거래 사실확인원을 첨부한다. 위 물건 모든 금융대출이자 B이 책임 지기로 한다. 또한 설정, 가등기,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C과 상의한다.
3. C이 B으로부터 양도받은 1항과 2항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 (삼십팔억칠천오십만사천 원)을 전체 금액에서 지불하지 못하면 B이 책임진다.
4. 분양대금은 C이 통장을 만들어 입금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B, C 공동으로 통장을 만들고 B은 도장을 만들어 C에게 인계한다. 입금된 분양대금은 E(S조합)통장에 다시 입금 하여 공사대금으로 결재한다.

입회인 : H (서명날인)

각서인 : B (서명날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였으며, 2022. 8. 11.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3,870,504,000원인데, 피고는 그중 2,392,176,529원[= 피고 주장 공제 금액 3,300,792,896원 - 원고가 다투는 금액(= 미지급한 금액 598,211,657원 +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310,404,710원)]을 원고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여기에 원고가 하도급대금 직불을 위하여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 259,243,805원을 합하여 정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37,571,276원(= 3,870,504,000원 - 2,392,176,529원 + 259,243,80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E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E이 원고 및 G에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G과 공동수급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전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공사대금 중 800,000,000원은 빌라 분양이 완료되는 경우에 이행기가 도래하는데, 빌라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다.

3.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 1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E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상 원고와 G이 공동수급체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사자들 사이에 G은 이 사건 공사에서 탈퇴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며 공사대금도 단독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당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E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고 금융기관³⁾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부지를 담보로 공사대금을 차용하면서 시공사를 E로 등록해두었으며, E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등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이후의 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시공사를 선

3) T조합로 보인다(갑 제14호증의2, 을구 21순번).

정하기로 하여 2021. 5.경 지인인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이후의 공사를 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이 원고에게 제안하여 원고,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이후의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준 금융기관이 시공사를 E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2021. 6. 1. 형식적으로 E이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는 취지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2021. 6. 8. 피고와 원고, G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 G에 이 사건 공사 잔여 부분을 전부 도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 피고, E, G 등 이 사건 공사 당사자들은 이면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E에서 원고와 G로 교체하기로 한 것이고, E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상 형식적으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

3) G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갑 제8, 10호증), 피고도 이를 승인 내지 용인하였다. 가사 G이 이 사건 공사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 이 사건 확약서 제3, 4항의 문언 및 G의 실질적 지배자인 H이 이 사건 확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G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원고로 확정하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 3,870,50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870,5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 중 800,0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상 800,000,000원은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취지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800,000,000원의 이행기를 분양완료시로 정하는 취지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이미 수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분양의 완료는 주로 건축주인 피고의 성의나 노력에 의하여 좌우되고, 원고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빌라가 2022. 8. 11. 준공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7. 18.까지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

리적인 기간 내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800,000,000원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나면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 E은 원고의 재하수급인들에게 총 3,300,792,896원(= 기지급한 금액 2,702,581,239원 + 세금계산서 발행되었으나 미지급한 금액 598,211,657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위 3,300,792,896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U에 대한 대여금 채권 13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지체상금 채권 225,000,000원, 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 60,000,000원의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4) E은 G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 291,979,99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및 G의 전체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직불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주장하는 3,300,792,896원 중 1,765,958,409원⁴⁾에 대하여는 원고도 공제

를 인정하나, 나머지 1,534,834,487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고,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과 이에 대한 판단을 요약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결국 일응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2,432,917,929원(= 다툼이 없는 1,765,985,409원 + 다툼이 있는 부분 중 공제할 수 있는 666,932,520원)이다.

〈표〉

순번 ⁵⁾	상호	피고 주장 공제 금액		공제 인정금액(원)	판단 근거
		미지급금(원)	기지급금(원)		
1	V	0	3,850,000	0	나) (1)
2	W	0	4,950,000	0	나) (1)
3	한국국토정보공사	0	2,050,400	0	나) (1)
4	(주)X	0	4,070,000	0	나) (1)
5	K	0	93,406,500	0	나) (2)
6	Y	0	15,240,000	6,500,000	나) (3)
8	Z	0	45,400,000	45,000,000	나) (5)
13	M	0	23,627,330	18,156,920	나) (4)
15	N	0	3,300,000	0	나) (2)
18	AA	0	5,775,000	5,698,000	나) (4)
24	(주)AB	69,000,000	52,000,000	52,000,000	가), 나) (6)
26	AC	71,000,000	203,000,000	203,000,000	가)
31	AD	495,000	4,070,000	4,070,000	가)
34	민원처리비(AE)	0	20,000,000	0	나) (2)
36	AF	0	28,752,800	27,972,800	나) (4)
37	O	66,000,000	77,000,000	0	가), 나) (2)
46	AG	8,050,350	19,360,000	19,360,000	가), 나) (6)

4) 을 제104호증의 순번 7(AH), 9 내지 12(AI, AJ, AK, AL(주)), 14(AM), 16(AN), 17(AO(AP)), 19(A(주)), 20(주식회사 AQ), 23(AR주식회사), 25(AS), 27 내지 30((주)AT, 주식회사 AU, AV, AW), 32(AX), 33((주)AY), 35(주식회사 AZ), 38 내지 45(미장, 인건비_사업소득, 도배_사업소득, 인건비, 내장, BA, 주식회사 BB, BC 주식회사), 47 내지 49(식대(BD), BE, BF), 52 내지 54(개별화물, 용달화물, 주식회사 BG), 57(BH_결제채측), 59(BI), 60(BJ), 65 내지 74(BK, BL(BM), 개별화물(BN), 개별화물(BO), 운반(BP), BQ, BR, BS, BT, (주)BU 76(한전), 78(BV(BW)), 79(BX(BY)), 81(BZ), 85(비계공 CA), 90(CB 주식회사), 92(수도요금), 97(계단청소)번 항목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위 각 항목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금액의 합계가 본문 기재 1,765,958,409원이다(을 104호증에는 순번 21, 22번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당초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다가 철회한 항목이다).

50	CC	8,481,000	1,174,800	1,174,800	가)
51	CD 주식회사	54,063,130	16,500,000	16,500,000	가) 나) (6)
55	CE	0 ⁶⁾	56,500,000	56,500,000	나) (6)
56	CF	2,980,000	15,500,000	15,500,000	가)
58	(주)CG	0	4,048,000	0	나) (5)
61	(주)CH	4,900,000	5,000,000	5,000,000	가)
62	CI	1,140,000	23,500,000	15,400,000	가), 나) (6)
63	CJ	0	270,000	0	나) (4)
64	(주)AB	0	2,508,000	0	나) (4)
75	CK	1	100,000	100,000	가)
77	CL	21,800,000	20,000,000	0	가), 나) (2)
80	CM	13,210,000	4,000,000	4,000,000	가), 나) (6)
82	(주)CN	129,665,976	88,000,000	88,000,000	가)
83	CO	31,700,000	15,000,000	15,000,000	가)
84	(주)CP	1,760,000	0	0	가)
86	조적(인건비)	430,000	3,000,000	0	가), 나) (4)
87	조적(인건비)	0	1,120,000	0	나) (4)
88	CQ	52,720,800	33,000,000	33,000,000	가)
89	CR	7,265,400	37,000,000	35,000,000	가), 나) (6)
91	CS	0	550,000	0	나) (4)
93	CT	1,100,000	0	0	가), 나) (6)
94	CU(주)	27,500,000	0	0	가)
95	CV	17,050,000	0	0	가)
96	CW	2,200,000	0	0	가), 나) (6)
98	CX	5,700,000	4,000,000	0	가), 나) (5)
합계		598,211,657	936,622,830	666,932,520	

가) 미지급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이 E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5) 을 제104호증 기준

6) CE와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4,488,05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E이 그중 5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는 7,988,050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미지급금의 공제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발행하였고, 그중 598,211,657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상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지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하도급업체와의 관계에서 종국적,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인 E에 대해 직불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하도급업체와의 관계에서 공사대금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⁷⁾,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기지급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기 지급한 금액 2,702,581,239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 지급한 금액에는 건축주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 310,404,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위 공제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청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기 지급한 금액 중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실제로 기 지급한 금액만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피고 주장의 위 기 지급한 금액 중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6)항 참조)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기재의 하도급대금 직불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위 제14조 제1항의 직불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1) 이 사건 계약 제1조 단서에 따른 제외 공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본문에서 원고의 공사범위를 '허가 도면에 의하여 착공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모든 행위'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단, 설계비, 감리비 및 부가세 별도 매입세 6%, 수도 등 모든 인입비와 소방, 통신, 전기 감리비 및 옹벽공사는 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7, 10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 업체는 토목 가시설 및 안전시설의 도면 설계 및 안전 점검, 측량 및 지반조사, 평판재하시험 등을 수행한 업체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이 사건 계약 제1조 단서에서 이 사건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설계비 또는 이에 준하는 작업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상 정하여진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피고 부담 공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K에 대한 93,406,500원, N에 대한 3,300,000원, 민원처리비 20,000,000원, O(에어컨)에 대한 77,000,000원,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비용 20,000,000원을 "건축주 부담 공사비"로 기재하였는바, 그 취지는 위 각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의 책임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 을 제8, 18, 37, 40, 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표 순번 5, 15, 34, 37, 77항 기재 공사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피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비용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공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해당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21. 5. 31. Y에 대한 인건비로 총 8,7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CY 등이 무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2021. 4. 및 5. 인건비라는 것이므로, 2021. 6. 8.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수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라 할 것이어서, 그 비용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표 순번 6번 기재 공사 중 8,740,000원 부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6,500,000원(= 피고 주장 공제금액 15,240,000원 - 8,740,000원)에 한하여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내지 허가도면 외 공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원고의 공사범위를 '허가도면에 의하여 착공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취지는 준공 후 공사 또는 허가 도면 외의 공사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공사의 비용은 건축주인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갑 제10호증, 을 제16, 21, 39, 66, 67 89, 90, 94, 10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 공사들은 준공 후 내지 허가도면 외 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아래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주인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순번	관련 업체 명	공사 내용	관련 공사 대금	관련 증거
13	M	준공 후: 2022. 8. 30. 자재 구매	5,470,410원	을 제16호증
18	AA	준공 후: 2023. 2. 15. 지게차 대여	77,000원	을 제21호증
36	AF	허가도면 외: 지하실 확장공사	780,000원	을 제39, 104호증
63	CJ	준공 후: 2022. 8. 17. 이후 공사	270,000원	갑 제10, 18호증
64	AB		2,508,000원	을 제66, 67호증
86	조적(인건비)	준공 후: 2022. 9. 7. 인건비 지급	3,000,000원	을 제89호증
87	조적(인건비)	준공 후: 2022. 9. 30. 인건비 지급	1,120,000원	갑 제10호증 을 제90호증
91	CS	준공 후: 2022. 8. 15. 중기 대여	550,000원	갑 제10호증 을 제94호증

이에 따라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련 업체 명	피고 주장 기지급금	공제 할 수 없는 금액	공제 인정 금액
13	M	23,627,330원	5,470,410원	18,156,920원
18	AA	5,775,000원	77,000원	5,698,000원
36	AF	28,752,800원	780,000원	27,972,800원
63	CJ	270,000원	270,000원	0원
64	AB	2,508,000원	2,508,000원	0원
86	조적(인건비)	3,000,000원	3,000,000원	0원
87	조적(인건비)	1,120,000원	1,120,000원	0원
91	CS	550,000원	550,000원	0원

(5) 기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성이 불분명한 공사

(가) 순번 8번 Z: 을 제11, 10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E은 2023. 6.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한 Z에 45,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400,000원은 가압류 해지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가압류 해지비의 경우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Z과 관련하여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45,000,000원이다.

(나) 순번 58번 (주)CG: 을 제6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G(이하 'CG'라 한다)는 2022. 2. 4. 공급받는 자를 E로 하여 4,048,0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E은 2023. 1. 16. CG에 위 4,04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G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강마루를 시공한 업체이므로 CG에 지급한 4,048,000원이 이 사건 공사 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CG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에는 관련 공사 현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반면 CR는 2022. 6. 24. 마루공사에 대한 대가로 35,00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적시되어 있으며 E이 CR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점, ③ 하나의 시공 현장에 2개 이상의 마루 공사업체가 시기를 달리하여 투입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CG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강마루를 시공한 업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4,048,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 순번 98번 CX: 피고는 피고 내지 E이 'CX' 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준공 및 입주 청소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에 따라 CX에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4,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부분 증거로 적시한 을 제101호증은 G과 E 사이에 체결된 별도 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4,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6)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등

(가) 순번 24번 AB: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B은 E과 ① 2021. 12. 31.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제외 10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22. 3. 22.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제외 1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②항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AB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②항의 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E은 2021. 9. 17.부터 2021. 11. 25.까지 (주)AB에 총 52,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먼저 체결된 위 ①항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충당되므로 결과적으로 ②항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AB에 지급된 52,000,000원은 원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과의 관련성을 다투지 않는 것이므로, 그 전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순번 46번 AG: 을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G는 E에 총 9차례에 걸쳐 27,410,35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중 8, 9번째 발행한 세금계산서(청구금액 각 2,618,000원, 349,800원)와 관련하여 피고가 AG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8, 9번째 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2,967,800원(= 2,618,000원 + 349,800원)은 이 사건 공

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E은 2021. 12. 31.부터 2023. 3. 28.까지 AG에 총 19,3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에 충당되므로, 결과적으로 8, 9번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청구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AG에 지급된 19,360,000원은 원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과의 관련성을 다투지 않는 것이므로, 그 전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순번 51번 CD 주식회사: 갑 제13호증, 을 제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D은 E에 ① 2022. 3. 31. 청구금액을 55,819,83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② 2022. 8. 23. 청구금액을 14,743,3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중 위 ②항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CD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②항 세금계산서 중 3,403,000원 부분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E은 2022. 1. 27. CD에 16,50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①항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에 충당되므로, 결과적으로 ②항 세금계산서에 따른 청구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CD에 지급된 16,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과의 관련성을 다투지 않는 것이므로, 그 전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순번 55번 CE: 을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E는 E에 5차례에 걸쳐 64,488,05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중 5

번째 발행한 세금계산서(청구금액 4,798,200원) 관련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4,798,2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E은 2022. 1. 27.부터 2023. 12. 26.까지 CE에 총 5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에 충당되므로, 결과적으로 5번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청구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CE에 지급된 56,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과의 관련성을 다투지 않는 것이므로, 그 전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마) 순번 62번 CI: 을 제6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I은 E에 ① 2022. 8. 17. 청구금액을 15,4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② 2023. 12. 12. 청구금액을 9,24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중 위 ②항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CI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②항 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9,24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내지 E은 2023. 2. 16.부터 2023. 9. 27.까지 CI에 총 2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법정변제충당하고 나면 위 ②항 세금계산서 중 8,100,000원(= 23,500,000원 - ①항 세금계산서 청구금액 15,400,000원)이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위 8,1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위 ②항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②항 세금계산서는 준공 후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주인 피고가 스스로 그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하는 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8,1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CI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5,400,000원(= 피고 주장 공제 금액 23,500,000원 - 공제할 수 없는 금액 8,100,000원)이다.

(바) 순번 80번 CM: 을 제8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M은 E에 ① 2022. 4. 29. 청구금액을 16,5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② 2022. 7. 30. 청구금액을 71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중 위 ②항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CD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②항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E은 2022. 2. 11. CM에 4,00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①항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에 충당되므로, 결과적으로 ②항 세금계산서에 따른 청구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CM에 지급된 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과의 관련성을 다투지 않는 것이므로, 그 전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 순번 89번 CR: 갑 제17호증, 을 제9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R는 ① 2022. 6. 24. E에 청구금액을 35,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② 2022. 8. 29.경 E로부터 9,265,400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중 ②항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CR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②항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

으므로 위 9,265,4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은 2022. 4. 25. CR에 35,000,000원, 2022. 8. 29. CR에 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법정변제충당하고 나면, 위 ②항 공사와 관련하여 2,000,000원이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위 2,0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위 ②항 공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②항 공사는 준공 후 허가도면 외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주인 피고가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2,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따라서 CR와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35,000,000원(= 피고 주장 공제 금액 37,000,000원 - 공제할 수 없는 금액 2,000,000원)이다.

(아) 순번 93번 CT, 순번 96번 CW: 원고는 피고가 위 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업체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3,300,000원(= CT 1,100,000원 + CW 2,2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10.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을 E 명의의 지급할 수 있도록 E 명의의 S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통장 및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21. 10. 26.부터 2022. 7. 7.까지 위 계좌에 총 259,243,805원을 입금한 사실, 위 계좌에서 259,243,805원을 넘는 금액이 이 사건 공사 현장 투입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

되었으며, 위 금액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반영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직불 형식으로 지급되어 공제를 주장하는 금액 중 259,243,805원은 피고의 재원이 아닌 원고의 재원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금액만큼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2,173,674,124원(= 2,432,917,929원 - 259,243,805원)이다.

2) 채권양도에 의한 변제 주장

가) 을 제10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2.경 원고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C을 각 지칭한다).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목적채권의 표시]

1. “갑” 이 채무자 U에게 가지는 대여금 청구채권 일금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
2. 이에 이자 채권 전부

제5조 [특약사항]

2. 경기도 양평군 I에 있는 J건물 다세대 신축현장 미불된 공사금 중 상기 양도 채권금을 “을” 이 채무자 U으로부터 변제 받으면, “을” 이 “갑”에게 청구한 미불 공사금 중 그 금액만큼을 정산하여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위 채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

서 채무자가 면책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위 채권 양도양수계약 제5조 제2항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가 위 U으로부터 130,000,000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면책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U으로부터 130,000,000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 주장

가) 지체상금 채권 225,000,000원

지체상금 채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에 따른 예정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참조), 지체상금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체상금 약정 사실을 먼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상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본 하도급계약서에 기준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위 기본하도급계약서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공사계약서⁸⁾상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지체상금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⁹⁾. 그렇다면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 60,000,000원

8) 공정거래위원회 2022. 12. 28. 개정

9) 이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3호)와 다른 점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제4항은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 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고 하는 보충규정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에 따르면 공사와 관련한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막연히 이 사건 빌라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를 포함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의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91,979,990원

피고는 G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291,979,99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G이 원고와 공동수급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당사자를 원고로 확정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696,829,876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870,504,000원 -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금액 2,173,674,124원) 및 그중 896,829,876원(= 1,696,829,876원 -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2. 11. 29.부터, 나머지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7. 18.의 다음날인 2024. 7.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중

판사 정희림

판사 유은지